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8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특정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동작구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를 통하여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단체의 설치·운영 및 등록 (안 제3조~제4조)
- 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안 제5조~7조)
- 다. 연구단체의 변동 및 등록취소 (안 제8조)
- 라. 연구단체 지원 및 의정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안 제9조~제10조)
- 마.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연구단체의 의무(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38
----------	------

발의일 : 2020. 1. .
발의자 : 서정택 의원 외 7 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특정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동작구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를 통하여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단체의 설치·운영 및 등록 (안 제3조~제4조)
- 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안 제5조~7조)
- 다. 연구단체의 변동 및 등록취소 (안 제8조)
- 라. 연구단체 지원 및 의정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안 제9조~제10조)
- 마.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연구단체의 의무(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기 타
 - 1) 개정안 : 별 첨
 - 2) 입법예고 : 2020. 1. - . ~ 2. -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연구단체에는 회장, 간사 각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⑤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후 해당 연구단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 통지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의 지급 및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의 변동 및 등록취소) ①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중단한 경우
2.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활동 계획서의 연구활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구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가 신청한 연구활동비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의 의무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위반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 구 단 체		
제 출 자		대 표 자 의원(인)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붙임>
연구활동비	총액	
	산출내역	<붙임>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

등록번호	제 호
등록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연구활동기간	~
연구활동비	지원액
	지원조건
비고	

본 연구 귀 단체를「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연구단체명		
제 출 자	대표자 의원(인)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인)
	변 경	의원(인)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액		연구활동비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			
수령 잔액 (D=A-B-C)			
수령인	성명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비 심사결과 통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주제	
		목적	
연구활동비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 내용	당초	주제	
		목적	
	변경	주제	
		목적	
변경사유			
변경 후	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비고			

※ 첨부: 세부 연구계획서(변경분)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